휴직자 복무관리 지침

제정 2020.12.29.

- 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휴직"이라 함은「인사규정」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을 말한다.
 - 2. "휴직의 목적 외 사용"이라 함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「한국인터넷 진흥원 정관」제1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제4조(휴직자의 의무) ①휴직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
 -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휴직자 복무관리 교육)** 인사담당부서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.
 - 1. 휴직 제도의 취지
 - 2.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
 - 3.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
 - 4.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
 - 5.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
 - 6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
- **제6조(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)** ①휴직 예정인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휴직원 제출 시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휴직자의 복무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매 반기말일(6월30일, 12월31일)까지 하되 최초의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6개월 미만 휴직자 또는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시점 이전 복직자는 복직 시에 제출하다.
- 제7조(휴직 실태점검 및 심사)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정기적으로 휴직 실태를 점검하며,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실시하되,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1.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

- 2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
- 3. 고의성 여부
- 4.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
- 5.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게 할 수 있다. ④인사위원회 심사 시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심사대상자는

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) 인사담당부서장은 제7조 제3항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12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휴직자 서약서

소 속	직 호	
성 명	사 번	

상기 본인은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휴직기간 동안 휴직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, 휴직의 목적 외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2.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, 휴직 실태 점검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
- 3.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 및 복직하겠으며,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인)
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

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

소 속	ex) 인사팀			
성명	<i>ex) 홍 길 동</i> 사 번 <i>ex) K02001</i>			
휴직종류	ex) 질병휴직, 육아휴직, 가족돌봄휴직 등			
휴직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년 개월)			
보수 수령여부	보수(봉급, 수당) 수령 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※ 보수 지급휴직 : 질병휴직			
해외체류 여부	해외 체류사실 해당여부 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※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체류는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해 ※ 해외거주 필수휴직: 유학휴직,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등			
	당 해외거주가 ② 체류기간 개월			
	시 필수가 아닌 경우 ③ 체류목적			
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	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(□가능, □불가능)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(해당시) □ 1월 미만, □ 1월 이상~3월 미만, □ 3월 이상~6월 미만, □ 6월 이상~1년 미만, □ 1년 이상 ③ 고의성 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(□허용, □불허용)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여부 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※ 겸업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			
년 월 일 성명 (인)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				